

의안번호	2204488
의 퇴 인	김남희의원
회 답 일	2024.11.7.
추계번호	24C419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의약품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 후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 이외의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함 (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국가가 지급하게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동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최근 5년간 (2019~2023년) 국가의 필수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지급 사례는 188건, 지급액은 총 3억 8,100만원임

[표1]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지급건수	44	47	42	28	27	188
지급액	203	54	54	56	14	381

자료: 질병관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현재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따라 국민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구제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의 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지급의 대상자 수 및 피해 수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현행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와 수준이 규정¹⁾되어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지급의 대상자들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1. 진료비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 30만원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장우윤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4741	jangwy93@assembly.go.kr